

**【별표 6】 사전 분석검토 후 사용 가능한 원료에 대한 지정요령** <신설 2009. 10. 1., 2015. 8. 24., 2018. 3. 30>

## 1. 지정신청

가. 별표 5의 3. 사전 분석검토 후 사용가능한 원료에서 규정한 원료를 사용하여 상토1호 및 상토2호(이하 "상토"라 한다.), 퇴비, 지렁이분, 석회처리, 동애등에분을 생산하는 자(이하 "신청자"라 한다)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원료 지정신청서 및 시료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업과학원 장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.<개정 2015. 8. 24., 2018. 3. 30.>

- 1) 이화학적 성분분석성적서(분석기관, 성분명, 분석성적, 분석방법 포함) 1부.
- 2) 신청원료의 배출과정에 대한 설명서(주 생산품의 제조원료명, 사용량, 특성, 폐기물 및 폐수처리시 사용물질, 사용량, 특성 포함) 1부.
- 3)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사본 1부.
- 4) 제약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및 폐수처리오니의 경우.

가) 발효에 이용된 미생물의 생물학적 안전성에 대한 공인기관의 증명서 1부.

나) 발효에 이용된 미생물이 작물에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받고자 하는 비료의 원료로 사용하여 발효 후 사멸 또는 기능이 상실되어 작물에 안전하다는 공인기관의 증명서 1부 및 재배시험성적서 1부(단, 재배시험성적은 필요한 경우 요구할 수 있다)<개정 2015. 8. 24.>

다) 기타 작물 및 인축에 유해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안전성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
나. 이화학적 성분분석성적서는 다음의 각 호에 의한다.

- 1) 이화학적 성분분석은 농촌진흥청장이 지정·고시한 비료 시험연구기관에서 분석한 것이어야 한다.<개정 2013. 2. 14.>
- 2) 분석방법은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 중의 별표1 "비료의 이화학적 검사방법"에 의하여야 한다. 다만 공정분석법이 없는 성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분석방법과 관련문헌을 제시 하여야 한다.
- 3) 분석시료는 분석기관에서 직접 입회하여 발취한 시료이어야 한다.

다. 시료는 1건당 500g으로 하며, 시료를 담은 포장지에는 지정신청 원료명, 신청자·배출업자의 주소, 성명 및 제조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.

## 2. 지정기준

가. 이화학적 성분분석성적은 다음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.<개정 2013. 10. 1.>

성분명	규격
1. 유기물	12% 이상<개정2013. 10. 1.>
2. 수분	85% 이하<신설2013. 10. 1., 2014. 7. 1.>
3. 건물중에 대하여	
가. 비소	45mg/kg이하 <개정2012. 7. 3.>
나. 수은	2mg/kg이하
다. 납	130mg/kg이하 <개정2012. 7. 3.>
라. 카드뮴	5mg/kg이하
마. 크롬	200mg/kg이하 <개정2012. 7. 3., 2013. 10. 1.>
바. 구리	360mg/kg이하 <개정2012. 7. 3., 2013. 10. 1.>
사. 아연	900mg/kg이하
아. 니켈	45mg/kg이하 <개정2012. 7. 3.>
자. 알루미늄	1.5 %이하<신설2013. 10. 1.>
기타 국립농업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성분	식물 및 토양에 위해성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

나. 원료의 배출과정에서 이물질의 혼입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식물 및 토양에 위해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에 의하여 판정한다.

다. 제약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및 폐수처리오니의 경우 발효에 이용된 미생물이 생물학적으로 안전하고 지정받고자 하는 비료의 원료로 사용하여 발효 및 사멸 또는 기능이 상실되어 작물 및 인축에 위해성이 없어 안전함이 입증되어야 한다.<개정 2015. 8. 24.>

### 3. 지정검토방법

가.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제1호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자가 제출한 이화학적 성분분석성적서 및 관련자료에 의하여 제2호 규정의 원료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.

나. 신청자가 제출한 원료지정 신청 자료가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 및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다. 원료지정 검토에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자의 입회하에 해당 지정신청 원료 배출과정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.

### 4. 지정서 교부 및 통지

가. 지정 신청원료의 검토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원료 지정서를 교부하고,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

다.<개정 2015. 8. 24.>

나. 원료 지정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원료지정 사항을 배출업체 및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,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개정 2015. 8. 24., 2021. 11. 24.>

## 5. 사후관리

가.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 원료를 사용하여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 및 지정원료를 배출하는 업체에 대하여 지정원료의 품질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11. 24.>

나. 국립농업과학원장은 지정받은 원료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료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11. 24.>

- 1)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.
- 2) 점검결과 지정기준에 부적합한 때.
- 3) 지정원료의 품질관리 실태점검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였을 때.
- 4) 지정 원료를 사용하여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의 등록취소·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원료 배출업소의 폐업 및 폐쇄 등으로 지정원료를 공급할 수 없는 경우.<개정 2015. 8. 24.>

다. 원료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비료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 절차에 준용하여 미리 해당 업체에 취소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며,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라. 소명 자료제출이 있는 때에는 그 자료를 검토한 후 원료지정 취소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마.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나목에 따른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신설 2021. 11. 24.>